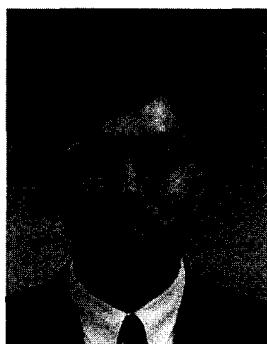


우리나라 주세제도의 합리적 개편방안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目 次 ■

- I. 배경
- II. 주세 과세의 이론적 근거
- III. 현황 및 최근의 통상협상 동향
- IV. 주세율 체계의 문제점
- V. 개선방향과 기대효과
- VI. 맺음말

I. 배경

우리나라에는 1909년에 주세가 처음 도입되었으며, 1949년 10월에 주세법이 제정되면서 현행 주세제도의 골격이 갖추어졌다. 주세의 일차적인 부과목적은 재정수입 확보에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구증가율 및 주류소비량의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주세의 세수확보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세는 대체로 고가·고급주에 높은 세율, 저가·저급주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주세부담의 수직적 형평성 제고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주류의 소비는 소득에 대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세부담이 역진적이다. 이러한 모습은 주세 도입 초기부터 지금 까지 그려하며 앞으로도 그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주세의 세수확보 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과다한 음주가 국민보건에 유해하므로 소비억제적 조세 또는 죄악세로서 주세의 과세목적을 개편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는 음주운전의 확대와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대, 음주에 따른 근로의욕 저하, 노동력 손실, 이에 따른 총체적 생산성 약화 등의 외부불경제가 크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는 세계무역기구 체제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선진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주세제도를 개편하라는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EC는 우리나라의 주세율 체계가 수입 주류에 대해 차별적이라고 하여 90년대 초에 주세협의를 개최하였다. 그 결과 두 차례에 걸쳐 위스키에 대한 주세율을 150%에서 100%로 인하하였으며, 증류주에 대한 관세율도 40%에서 20%로 인하하였다. 또한 소주에 대해서는 95년부터 세율 10%의 교육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EU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작년에 소주(35%)와 위스키(100%)에 대한 주세율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고 하면서 통상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이 문제가 WTO의 분쟁 절차에 회부되어 본격적인 분쟁 해결 절차에 돌입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세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주종간 상대세율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 주세수입이 특정 주종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 주세율 체계가 외부불경제 축소와 상당히 큰 괴리가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외 통상협상 문제도 현안이 되고 있다. 따라서 차제에 우리나라 주세제도에 대한 적정성 및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외통상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세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개선할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II. 주세 과세의 이론적 근거

소비자는 소득과 부를 바탕으로 소비를 함으로써 효용을 얻는다. 소비의 대상은 재화와 용역, 그리고 총가용시간에서 노동공급시간을 제외한 여가를 포함한다.

재화, 용역의 생산·소비과정에서 외부효과

가 발생하지 않고 아무런 조세도 부과되지 않는다면 경쟁시장에서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그러나 조세를 부과하면 상대가격 구조가 변화되어 소비구성이 변화되기 때문에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해된다. 조세를 부과하더라도 자원배분을 왜곡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가격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소비대상에 대해 단일세율의 소비세를 부과하여 가격을 동일 비율만큼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가에 대해 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상대가격구조를 전혀 왜곡하지 않는 조세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종국적으로 크던 작던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해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가 또는 노동공급에 대한 선택이 매우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해 단일세율의 소비세를 부과하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보장된다. 이는 소비세를 과세하더라도 여가의 선택이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모든 재화와 용역을 대상으로 10%의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여가에 대한 선택이 탄력적이라면 단일세율의 소비세를 부과하더라도 여가의 선택이 변화하므로 자원배분이 왜곡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비세를 부과함에 따라 자원배분이 왜곡되는 것이 불가피하더라도 사회적 후생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비세의 세율을 차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가격의 변동에 따라 수요량의 변화가 큰 경우에는 낮은 세율을, 수요량의 변화가 작은 경우에는 높은 세율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는 수요가 동일 비율만큼 변화하도록 함으로써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현재 가전제품 등에 비해 수요가 비탄력적인 주류에 대해 보다 높은 개별소비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소비세를 부과하면 세부담의 형평성이 저해된다. 왜냐하면 수요가 비탄력적인 것은 대부분 생활필수품인 반면 수요가 탄력적인 것에는 사치품이 많기 때문에 생활필수품에 대해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사치품에 대해 낮은 세율을 부과하면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과중해지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는 재화나 용역의 생산·소비과정에서 외부불경제가 초래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불경제가 개입되는 경우에는 외부불경제를 시정하기 위한 소비세의 부과가 필요하다. 일례로 술을 소비할 때 소비자가 단순히 음주로부터 효용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같은 폐해도 함께 초래된다. 이 경우 소비자는 술을 구입하는 데 소요된 비용만 지불하고 교통사고 비용이 사회적 비용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소비자가 외부불경제에 따른 외부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류에 대해서도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환경세 등과 유사한 논리를 적용하여 소비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III. 현황 및 최근의 통상협상 동향

현행 주세법에서는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주류로 정의하고 있고, 주정, 소주, 맥주, 위스키 등 11가지로 주류를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세는 주세법 제정 당시에는 종량세 체계로 출발하였으나 67년과 71년의 세

법개정을 통해 주정을 제외한 모든 주류에 대해 종가세 체계로 전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주세 과세체계의 전환 이후 70년대와 80년대에도 주세율이 개편되었으나 기본골격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91년에 이르러 세율 체계가 대폭 개편되었다. 91년 7월부터 명약주와 합성청주가 청주로 통합되면서 세율이 70%로 단일화되었고 기타양조주, 고량주, 기타증류주, 기타재제주도 일반 증류주로 통합되면서 세율도 80%로 조정되었다. 소주는 회석식과 증류식으로 구분되면서 세율도 35%로 50%로 차등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위스키와 브랜디의 세율은 맥주와 같은 150%로 조정되었다.

90년대에는 한·EC 주세협의가 개최되면서 위스키에 대한 주세율이 100%로 인하되었다. 맥주에 대한 주세율은 금년부터 130%로 인하되었다. 현재 주세율이 80% 미만인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액의 10%, 주세율이 80%를 초과하는 주류에 대해선 30%의 교육세가 과세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세수입은 2조원 정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다. 이는 주류의 소비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세율이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작년에 35억리터의 주류가 출고되어 국민 1인당 소비량이 약75~80리터 정도에 이르고 있다. 최근에는 1인당 주류소비량이 거의 일정한 가운데 인구증가율이 1% 이하로 축소되고 있어 음주인구의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주류 소비량 또한 증가추세가 둔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맥주가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다. 작년 현재 맥주와 소주의 소비비중은 54%와 23%로 총 주류 소비량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다. 위스키는 소비비중이 작지만

최근에는 수입 위스키를 중심으로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맥주와 소주의 주세수입 기여도는 작년 현재 69%와 11%, 도합 80% 정도이다. 맥주는 세수점유비가 소비량 점유비보다 높은 반면, 소주는 소비량 점유비가 훨씬 높다. 이러한 차이는 맥주 세율이 소주 세율보다 높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주류의 소비는 소득에 대해 비탄력적이다. 따라서 대중적인 소비기반을 가지고 있는 주류에 대한 주세부담은 소득과 역의 관계에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중주인 맥주와 소주의 주세부담은 역진적이다. 청주, 탁주, 과실주 등도 주세부담이 역진적이다. 반면에 위스키의 경우에는 주세부담이 누진적이다. 이는 위스키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세부담의 수직적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주세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위스키 등 고가·고급주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의 주류 소비량은 94년 현재 96억리터, 국민 1인당 소비량은 약 75리터로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일본에서는 맥주의 소비비중이 4분의 3정도로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청주가 13%로 많이 소비되고 있다. 그리고 소주는 6% 정도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소주가 대중주인 반면 일본에서는 청주가 대중주인 반면 소주는 대중주가 아니라 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대부분의 EU 국가에서는 주세의 과세체계가 종량세 체계로 되어 있다. 그러나 핀란드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부의 저알콜 맥주 제품에 대해 종량세 체계로 과세하고 있을 뿐 나머지 주류에 대해서는 종가세 체계로 과세하고 있다. EU에서는 대부분 알콜도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하고 있다. 특히 영국, 독일, 프

랑스에서는 스페릿류에 대한 주세율을 알콜도수에 완전히 비례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 밖에 EU에서는 맥주나 와인보다는 스페릿류에 대해 더 높은 주세율을 책정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EU는 일견 유사성을 발견하기 어려운 소주와 위스키에 대해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문제 삼아 일본을 WTO에 제소하였고 작년에 WTO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일·EU 주세협의가 종결되었다. WTO의 패널은 일본의 주세가 소주와 위스키간 세율을 차등하여 GATT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일본은 소주와 위스키간의 세율 격차를 최소허용기준 이내로 축소하도록 주세법을 개정하였다.

EU는 일·EU 주세협의에서 승소함에 따라 다음 협상대상으로 우리나라를 지목하였다.

EU는 일·EU 주세협의의 WTO 패널 보고서를 기초로 우리나라의 주세제도가 차별적 조세정책을 금지하고 있는 GATT 제3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차별적인 주세제도를 개편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금년 1월 브뤼셀에서 한·EU 주세협의를 개최하였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지난 4월 WTO에 제소 당하였다.

일·EU간 주세분쟁에서 WTO의 패널은 소주와 위스키가 대체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두 차례에 걸쳐 위스키에 대한 세율을 인하한 이후 위스키의 시장점유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와 같은 사례는 한·EU 주세협의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소주와 위스키의 주소비자층이 구분되어 있다는 점, 일본과 달리 소주가 대중주라는 점 등의 차이를 놓고 볼 때, 소주와 위스키가 대체관계에 있다는 EU의

주장을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WTO 체제하에서 자유무역 질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EU가 우리보다 힘에 있어 우위에 있고 한·EU 주세협의라는 선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한·EU 주세협의에서도 일본 등이 주장한 내용을 반복하는 정도로는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EU 주세협의에서는 소주와 위스키간에 대체관계가 없음에 대한 보다 명확한 증거 제시가 필요하다.

WTO 패널의 결정사항을 보면 알콜도수의 차이에 따라 세율 격차를 두는 것은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EU 국가에서도 스피릿류에 대해 알콜도수에 비례하여 세율을 책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알콜도수 차이에 따른 세율 차등화는 일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그러한 것이 종량세 체계하에서 운용되고 있는 반면 종가세 체계하에서는 아직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사례가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한·EU 주세협의에서 우리나라가 불가피하게 수용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수용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설정에 부합되도록 협상안을 제시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IV. 주세율 체계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주세율 체계와 관련해서는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및 음주에 따른 외부불경제 축소 문제, 대외통상 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동종 또는 유사 제품으로서 경쟁 또는 대체관계에 있는 주류에 대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알콜도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하고 있다. 특히 이 가

운데 알콜도수에 따라 주세율을 차등화하는 것은 지나친 음주가 인체에 유해하므로 고알콜주에 대한 소비를 억제하는 데 근본 취지가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서민 대중이 많이 소비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 중·고소득층이 많이 소비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등 세부담의 형평성을 우선하여 세율을 책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동종 또는 유사 제품으로서 대체관계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하거나 알콜도수의 차이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하지 않고 있다.

현재 위스키에는 10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반면 소주에는 35%가 적용되고 있다. 위스키와 소주의 알콜도수는 대부분 각각 40도와 25도인 점을 놓고 볼 때 현재의 세율 격차는 알콜도수의 차이 보다 더 크다.

우리나라의 주세율 체계가 대체로 세부담의 형평성 측면을 고려하여 책정되어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다. 일례로 맥주의 경우에는 13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고급·고가 주인 위스키의 100%보다 높다. 따라서 과세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맥주는 알콜도수가 대부분 5도 이하인 반면 위스키와 소주는 맥주보다 알콜도수가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외부불경제 측면에서도 세율격차에 대한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주세율 체계는 저소득층이 많이 소비하는 대중주에 대해 세율을 낮게 책정함으로써 세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류 소비량은 세계적으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음주에 따른 폐해도 매우 심각하다. 음주에 따른 폐해로는 알콜중독, 음주운전, 음주에 따른 생산성 감소, 주류 생산·소비에 따른 직·간접적인

수질오염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범세계적으로 흡연이나 음주에 따른 폐해를 축소시키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주세율 체계도 세부담의 형평성뿐만 아니라 외부불경제 측면도 고려하여 개편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개편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에서도 설득력이 있다.

한·EU 주세협의의 핵심 논의대상은 스피릿류에 대한 것이다. 그 가운데 소주와 위스키 간의 세율 격차 문제가 가장 큰 쟁점사항이 되고 있다. EU는 비록 소주와 위스키가 동질 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체관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자간의 세율격차를 최소 허용기준 이내로 축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EU의 주장은 일·EU 주세협의에서 승소한 바 있어 우리나라가 운신할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좁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EU 주세협의에서는 소주와 위스키간에 대체관계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일·EU 주세협의와 유사한 결론이 도출되는 경우에는 소주와 위스키 및 이와 유사한 주종에 대한 현재의 세율 격차를 축소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제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사항, 예를 들면 알콜도수의 차이에 따른 세율 격차는 최소 허용기준 이내의 범위에서 수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V. 개선방향과 기대효과

음주에 따른 외부불경제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알콜도수가 같은 주류에 대해 동일세율로 과세하고 알콜도수가 다른 주류에 대해서는 차등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요청된다. 다만 이

경우 기준세율에 대해서는 차등을 두지 않는 것이 과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맥주에 대한 주세율이 위스키보다 높은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외부불경제 측면에서도 당위성을 찾기 어렵다. 그러므로 맥주에 대한 세율을 위스키에 대한 세율보다 낮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맥주 세율을 인하하면 주세수입이 급격히 감소하므로 단기적으로 맥주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러므로 맥주에 대해서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여타 주류 제품과의 과세의 형평성과 외부불경제 등을 고려하여 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고알콜주는 스피릿류에 속한다. 따라서 음주에 따른 외부불경제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스피릿류에 대한 주세율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스피릿류에 대한 주세율 체계의 개편을 논함에 있어서는 음주의 폐해를 축소하기 위해 고알콜주에 대한 소비를 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외통상 문제까지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대외통상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개편방향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소주와 위스키간에 대체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주세율 체계에 대한 개편방안을 논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소주와 위스키의 주된 소비자 계층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음주형태도 크게 다르다. 또한 주류의 주된 판매장소 등의 측면에서 상당히 큰 괴리가 있는바 양자간에 대체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주세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행 주세율 체계가 음주에 따른 외부불경제 축소를 위해서는 개편의 여지가 있음을 물론이다.

둘째, 소주의 위스키간에 대체관계가 없다는

점이 한·EU 주세협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소주와 위스키 등 스피릿류 전반에 대한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 종량세 체계를 가지고 있는 외국의 경우에는 알콜도수의 차이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종가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직 국제적으로 선례가 없다. 그러나 종가세 체계하에서도 알콜도수 차이에 따른 세율 차등화 방안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음주에 따른 사회적 외부비용, 즉 외부불경제 축소를 위한 개편의 필요성과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주와 위스키간의 주세율 격차를 알콜도수에 비례하도록 차등화하는 방안이 EU가 주장하는 최소 허용기준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극단적인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스피릿류 전반에 대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스피릿류에 대한 주세율 체계 개편방안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소주와 위스키에 대해서는 알콜도수당 세율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알콜도수의 차이에 의해서만 세율이 비례적으로 차등화하고 알콜도수 1도당 기준 세율은 스피릿류내에서 주종의 구분에 불문하고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종가세 체계하에서 알콜도수 차이에 따라 주세율을 차등화하는 것은 아직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범이 없기 때문에 스피릿류 전반에 걸쳐 알콜도수의 고저에 불문하고 무조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 극단적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하여 모든 스피릿류에 대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편은 우리나라의 주세를 소비억제적 조세 또는 죄악세로서의 성격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 국제적으로도 국민보건위생 측면에서 담배, 술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과세를 강화하고 있고, 흡연과 음주가 초래하는 사회적 폐해의 정도에 따라 차등과세하는 경향이 있음을 볼 때 그러한 개편은 시대적 흐름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직접적으로 한·EU 주세협의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그러나 만약 한·EU 주세협의에서 불가피하게 알콜도수에 관계없이 세율을 완전히 동일하게 개편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 즉 알콜도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스피릿류에 대한 주세율을 동일하게 개편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이는 저알콜주에 대한 소비를 억제하고 고알콜주에 대한 소비를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더욱이 이는 음주에 따른 사회적 외부불경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므로 사회·경제·국민보건위생 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결과를 야기하여 국민후생을 열악하게 할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주세분에 대한 현행 교육세의 세율은 주세율 80%를 기준으로 주세액의 10% 또는 30%로 세율이 차등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미 주세율이 차등화된 상태에서 교육세까지 차등화하면 주류별로 총소비세의 부담률 격차는 더욱 확대된다. 따라서 교육세에 대해서는 단일세율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세율 체계를 알콜도수에 비례하여 차등화하는 경우에는 주종간의 세율 격차가 제거되므로 주세제도의 차별적 요소가 없어진다. 따라서 EU가 주장하는 세율 격차 문제가 해소되므로 통상마찰의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세율조정에 따라 주종간 상대가격

구조가 변화하여 주종간 시장점유율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소주의 수요가 대부분 맥주의 수요 증가로 나타날 것인바 소주 수요의 감소는 소주 제조회사의 경영압박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부분의 소주 제조사가 결손을 내고 있기 때문에 소주의 세율을 인상할 경우 상당 부분을 경영 합리화 등을 통해 흡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알콜도수에 따라 주세율이 차등화되기 때문에 세부담의 형평성뿐만 아니라 음주에 따른 외부불경제 축소 측면도 상당 부분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 고알콜주에 대한 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주류 소비패턴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는 곧 사회적 외부비용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주와 일반증류주, 리큐르 등 스피릿류에 대한 세율인상은 가격인상을 초래할 것이다. 특히 소주의 경우에는 세율이 현행보다 크게 인상될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회석식 소주는 절대가격이 낮기 때문에 세율인상에 다른 가격인상의 절대액은 크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증류식 소주의 경우에는 대부분 제조원가가 높기 때문에 세율인상에 따라 가격인상 폭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맥주에 대한 주세율을 중장기적으로 인하하는 경우에는 수천억원 정도 세수가 감소 할 것이다. 따라서 재정압박 요인이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소주 등 스피릿류 전반에 걸친 주세율을 알콜도수에 비례하여 차등화하는 경우에는 소주 세율의 인상이 필요하므로 이에 따라 소주로부터 수천억원 정도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주류 전반에 걸친 세율조정은 주종 별로 반대 방향으로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바 전체적으로는 세수감소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그러한 변화는 우리나라 주류시장의 재편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이해당사자들의 득실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VI. 맷음말

우리나라의 주세율 체계는 세부담의 형평성 측면에 치중하고 있는 반면에 음주에 따른 외부불경제 문제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EU로부터의 통상압력 등 대외 통상문제도 현안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세제도에 대한 개편은 형평성, 외부불경제, 대외통상 문제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주세율 체계가 저가·고급주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고급·고가주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맥주가 고급·고가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장 주세율이 높다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따라서 형평성 측면에서 맥주에 대한 주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류는 대중적인 소비기반을 가지는 기호품인 동시에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재화이므로 외부불경제 측면에서 소비억제라는 상반된 목표를 추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음주에 따른 외부불경제 축소를 위해서는 고알콜주에 대한 소비억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고알콜주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주 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EU와의 협상에 있어 불가피하게 선택해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부불경제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주세율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는 차원에서도 타당성이 있는 만큼 우리의 사고를 전향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방향으로 주세율 체계를 개편함에

있어서는 알콜도수의 차이에 따라 주세율을 차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세율 차등화는 이미 국제적으로 용인되고 있는바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EU와의 통상협상에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주세율 체계를 합리화한다는 차원에서도 그러한 방향으로의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주세율 체계를 알콜도수에 비례하도록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종별로 수요의 변화율 및 변화방향이 제각각일 것으로 예상되는바 주류시장의 재편이 불가피하다. 소주는 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여 시장점유율이 하락하는 반면 맥주에 대해 세율을 중기적으로 인하하면 맥주의 시장점유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주세율의 조정은 주류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의미하는바 단기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상당히 클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주세율 체계를 개편하면 단기적으로 소주 등의 시장 축소가 예상되는 바 관련 기업의 경영압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최근에는 일부 소주사들이 경기부진과 자금압박의 가중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주세율의 개편은 이들 회사에 경영압박을 가중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으로의 개편은 대외통상 문제를 원활히 해소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류 관련 정책을 미래지향적이고 사회적 외부비용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개하기 위해 불가피한 방향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Love vanquishes time. To lovers, a moment can be eternity,
eternity can be the tick of a clock.**

사랑은 시간을 초월한다. 사랑하는 사람에겐 순간이 영원이 될 수 있으며 영원은 시계의 똑딱 소리 처럼 짧은 시간이 될 수 있다.

- Mary Parrish -